

『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의료보호법」이 「의료급여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「의료급여법」 개정 용어 반영(안 제1조 ~ 제3조, 제6조, 제7조)
 - 당초 : 의료보호, 대불금 → 변경 : 의료급여, 대지급금
-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 명칭 변경 (안 제7조)
 - 당초 : 기금출납명령관, 기금출납공무원
 - 변경 : 기금담당관, 기금출납원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의료급여법」,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‘의료보호, 대불금’ 용어를 ‘의료급여, 대지급금’으로,
- ‘기금출납명령관, 기금출납공무원’을 ‘기금담당관, 기금출납원’으로 변경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지원기준이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